#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결 정

사 건 명 15-직권-00005 일괄소지품 검사 및 연대책임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 해 자 000000고등학교 재학생

피 조 사 자 1. 000(000000고등학교 인성인권부장)

2. 000(000000고등학교 교장 직무대리)

# 주 문

#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아님에도, 이런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동의 없이 공개된 장 소에서 일괄적으로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한 학생의 규정위반에 대해 해당 반 전체 학생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2. 000000고등학교장에게,

가. 피조사자 1.과 몇몇 교사들이,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아님에도, 이런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동의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소지품을 검사하여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과, 학교에서 일부 학생의 규정위반에 대하여 해당 반 전체 학생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제도를 시행하였던 것은, 교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므로, 교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나. 위 가.항의 조치와 별도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인성인권부장을 포함한 인성인권부 소속 교사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학생회의 회의를 거쳐 학생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제도를 만든 것은, 학생들이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감수성이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라. 위 다.항의 조치와 별도로,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학생회 임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I. 직권조사 개요

### 1. 직권조사 실시 배경과 목적

2015. 6. 10.(수),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학생인권교육센터"라 한다)에 '000000고등학교에서 같은 달 9.(화) 0학년 학생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소지품을 검사하였다'는 내용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같은 달 12.(금), '위 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교칙을 위반하면 같은 반전체 학생들에게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의 추가 상담이 접수되었다. 위 상담 내용과 관련하여, 일괄소지품 검사 및 연대책임에 대해기초조사를 한 결과, 그 내용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피해학생들이 다수라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직권조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조사하였다.

# 2. 직권조사의 방법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15. 6. 11.(목) 직권조사를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7. 6.(월)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한 후, 같은 해 7. 21.(화) 관련자 면담조사 및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Ⅱ.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 1.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 가. 피조사자 1.의 주장

1) 2011. 경부터 매년 학생인권 관련 내용의 연수를 받았고, 교직원회의에서 학생인권교육을 비롯한 인권관련 사항을 전달받았다.

# 2) 일괄소지품 검사 관련

- 가) 2015. 6. 10.(수)은 0학년 학생들이 졸업사진을 찍는 날이었다.
- 나) 1차 일괄 소지품검사 관련

한 학생이 화장품이 담긴 종이가방 2개를 양 손에 들고 등교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는 학교 규정(학생은 화장을 못 하도록 되어 있음)에 어긋나는 행위이기에 지도하였다. 이를 적발한 이후, 7:30경부터 정문에서 소지품검사를 하였다.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학생들에게 명시적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

소지품 검사를 하기 위해서, 1, 0학년 은 교문 옆 공간으로 통행하도록 했고, 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0학년 은 옆으로 서라", "화

장품 가지고 있으면, 자진해서 선생님에게 내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학생들이 직접 화장품을 제출한 경우는 극히 적었고, 학생들이 화장 품을 수풀이나 잔디밭 등에 숨겨놓았다.

학생들에게 '책가방을 몸 앞쪽으로 메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책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살펴보았으며, 학생들의 책가방을 거꾸로 세워 내용물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검사를 하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 다) 2차 일괄 소지품검사 관련

0학년 각 반 교실에 입실하여, "지금부터 화장품 소지 여부를 검사하겠습니다"라고 안내한 후 소지품을 검사했고, 학생들에게 동의 를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오전 중 졸업사진촬영이 계속 되었고,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화장한 학생들의 얼굴을 (클렌징)티슈를 이용하여 지워주면서화장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

학생들이 "저희는 화장을 지우고 촬영을 했는데, 이과반 애들은 화장을 하고 찍으면 안 되지 않나요?", "화장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 어요", "선생님 화장품 가지고 있는 학생 찾아주세요"라고 계속 신고 하여, 학생들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학생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온 사 항에 대해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5, 6교시에 000, 000 선생님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학생들이 화장품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0학년 각 반 교실을 대상으로, 1반부터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교실에는 여자 교사들만 들어

가고, 남자교사들(000, 000)은 복도 및 실외에 학생들이 숨겨 놓은 화 장품을 찾았다.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걸린 시간은, 한 학급당 대략 5~10분 정도였던 것 같고, 실제로 압수한 화장품은 학생들이 스스로 낸 것을 포함하여 15~20개 정도였다. 압수한 화장품은 대부분 에어컨 필터 커버, 화장실, 전원박스, 쓰레기통, 청소도구함, 문필봉(사용하지 않는 사물함), 창틀, 야외 풀숲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학생들의 교복 상의가 짧고 치마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복 주머니에 틴트를 넣어 놓으면 그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 나와서,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했고, 학생들의신체에 접촉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학생들의 책가방을 거꾸로 세워내용물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검사를 하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압수한 화장품 등은 마땅히 담을 봉투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봉투(비닐)에 담아서 보관하였고, 각 학급별로 분류하기 위해 봉투 10장을 준비했는데, 수거한 물품의 개수가 많지 않아, 학교 건물 밖에서 찾은 물품과 함께 넣어 보관하였다.

사건 당일 이후, 쿨메신저를 통해 0학년 각 반 담임선생님에게, '2015. 7. 9. 전국연합평가가 끝난 후, 화장품 등을 반환하여 주겠다' 고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일자에 채점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화장품 등을 돌려주었다.

화장품과 관련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색조화장을 한 학생에게 클렌징 티슈 또는 폼클렌징을 주면서 화

장을 지우도록 지도하고 있다. 학생들로부터 압수하여 보관하던 물품을 분실하여 보상해 준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에, 가능한 한 압수는 하지 않고 있다. 차후에는 재학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토요일에 졸업사진을 촬영하거나, 사전에 학생들에게 화장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는 방법으로 지도하겠다.

### 3) 연대책임 관련

2012. 5.부터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중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게 고 있다.

2012. 5.~7.경에 걸쳐, 생활복을 착용하고 등·하교하다가 적발된학생이 20여 명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후 학급회의 및 학년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2013년부터 연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체육복도 생활복과 같은 기준으로 연대책임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은, 위와 같은 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수에 비례하여, 적발된 학생 한 명당 하루씩 잡아, 해당 학급 학생들 전체가 그 일수만큼 생활복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생활복과 관련한 지도는 주로 인성인권부 소속 선생님들이 하고 있고, 학생들이 생활복을 착용하고 등·학교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 는, 그 해당 학급 실장과 함께 인성인권부로 불러, 생활복을 입을 수 없는 일자를 적은 안내장을 주고 학급 학생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2015. 6.경, '생활복 연대책임은 시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

냐?'는 일부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어, 같은 해 7. 15. 학생회 및 각 반실장들이 학생들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근거로 학생회 회의를 하였는데, 회의 결과 연대책임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교감선생님(교장직무대리)께서 "그래도 (인권)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재의 연대책임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연대책임제를 폐지하고 학교생활규정상 '교복 미착용'으로 벌점 5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나.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소지품 검사는 1·2차로 나뉘어 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연대책임은 0·0·0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설문조사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0학년 (표본조사 2개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지품검사와 연대책임에 관하여 설문조사하고, 0학년 (표본조사 1개 학급) 학생들과 0학년 (표본조사 1개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대책임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1) 0학년 0반, 0반 학생들(응답자 66명) 설문조사 결과

# 가) 일괄 소지품검사 관련 : 1차(정문), 2차(교실)

- (1) 2015. 6. 10.(수) 오전 학교 정문, 오후 0학년 각 반 교실에서 소지품을 검사할 때,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응답자 55명)
- (2) 위 날은 졸업사진을 세 번째 찍는 날이었는데, 선생님이 첫째 날, 둘째 날에는 '너무 지나친 화장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소지 품을 검사하지는 않았다.
  - (3) 정문에서 세 명의 선생님이 0학년 학생들만 한 줄(또는 두

- 줄)로 서게 하여 소지품검사를 하였고, 색조 및 화이트닝 제품을 압수하였다. 정문에서 검사할 때, 학생들이 메고 있던 가방을 앞으로 돌리게 한 다음에, 선생님이 가방의 지퍼를 열어 직접 검사하였고 주머니도 검사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주변의 풀숲과 화단에 숨겨 놓은 화장품(파우치 포함)도 찾아내어 압수하였다.
- (4) 인성인권부 선생님들이 0학년 각 반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가방, 사물함, 에어컨 커버, 쓰레기통, 책상서랍, 신발장, 커튼, 컴퓨터장등을 확인하여 숨겨놓은 화장품 등이 있는지 찾았고, 여자 선생님들은 교실에 들어와서 소지품을 검사하였으며, 남자 선생님들은 출입을통제하고 신발장을 검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치마 주머니 안에 있는 소지품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엉덩이 부위에 불쾌한신체접촉이 있었다.(응답자 19명). 여자선생님이 손바닥으로 스치듯옷을 훑어 검사하기도 했다.
- (5) 교실에서 소지품을 검사할 때, 가방 안의 내용물을 책상 위에 다 쏟아내는 방법으로 검사하였고, 자리에 없는 학생의 소지품(가방) 도 검사하였다.
- (6) 소지품을 검사할 때, 여성용품도 있는데 남자 선생님들이 보아서 수치스러웠고, 매우 불쾌하고 당황스러웠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으면 좋겠다.
- (7) 학교생활규정상 화장이 금지되어 있고, 당시 대다수의 학생이 화장품, 고데기 등을 가져왔기에, 인성인권부장 선생님이 규정을 지키 기 위해 올바른 대처를 한 것이고, 이것도 교육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 나) 생활복 연대책임 관련

- (1) 생활복(체육복 포함)을 착용하고 등·하교하다가 적발되면, 연대책임을 지고 개인벌점이 부과된다. 적발된 학생 한 명당 하루씩 연대책임을 부담했다.
- (2) 2015. 7. 20. 현재, 생활복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폐지되었고, 벌점(5점)만 받는다. 이번 주부터 연대책임이 사라져서 마음이 편하다. 한 명 때문에 반 전체가 피해보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3) 생활복 착용 금지일이 시험일이거나 무더운 날과 겹치면, 착용금지일이 이후로 연기되었고, 적발된 학생들 중 대부분은 학급 친구들에게 미안해하며, 간식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 (4) 연대책임기간에 적발되면, 2배로 벌칙 기간이 늘어나기도 하였다.
- (5) 생활복 연대책임의 취지는, 학생에게 책임감을 높여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2) 0학년 0반, 0학년 0반 학생(응답자 70명) 설문결과

- 가) 생활복을 입고 등·하교를 하거나 외출을 하다가 적발되면, 적발된 학생과 그 학생이 소속된 학급 학생 전체가 하루씩 생활복을 입을 수 없었는데, 최근에 개인벌점(5점)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 나) 체육복을 체육시간이 아닌 시간에 입고 다니다가 적발되어도, 생활복과 동일한 연대책임을 부과했다.
  - 다) 적발된 학생의 이름이 (교실)문 앞에 기재된다. 연대책임제를

실시하면, 반 전체에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 것 같다.

- 라) 학생들의 요구로, 전(前) 학생회에서 연대책임제를 결정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생활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다. 참고인들의 주장(0학년 〇〇〇 외 4명)

# 1) 일괄 소지품검사 관련

- 가) 이 사건 외에 평상시 소지품검사를 일괄적으로 시행한 적은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다.
- 나) 소지품검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소지품 검사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
- 다) 졸업사진을 촬영하는 날 아침에, 교문에서 000 선생님(피조사자 1.)이 0, 0학년 학생들은 다 옆으로 통과하도록 하고, 0학년 학생들만 옆으로 일렬로 서도록 하는 것을 보았다.
- 라) 0학년 학생들이 줄을 선 상태에서, 화장품을 숨기려고 흙 속에 던지고,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모습을 보았다.
- 마) 선생님이 '가방을 앞으로 돌려서 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못했고, 가방을 뒤집어서 탈탈 터는 방법으로 검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가방을 뒤집어서 안의 소지품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는데, 교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2) 생활복 연대책임 관련

- 가) 생활복을 착용하고 등·하교 하다가 적발되면, 적발된 학생 1명 당 1일씩 계산하여, 그 학생이 속한 학급의 학생 전체가 생활복을 입 지 못한다.
- 나) 생활복을 도입할 때(2013. 또는 2014.), 생활복은 학교생활 중에만 착용하고, 등교 및 하교할 때에는 입지 않도록 모두 약속하여시행하였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 다) 모 학급 학생(해당 학급 실장, 성명 미상)이, 생활복과 관련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다수결로 학생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친 후 위 방안이 통과되었으며, 학교에서는 이를 승인하여 연대책임제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 라) 적발된 학생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생활복을 못입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해한다.

#### 3. 인정사실 및 판단

# 가. 인정사실

피조사자의 문답서, 피해자들의 면담 및 설문조사결과,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1차 일괄 소지품검사 관련

가) 2015. 6. 10.(수), 위 학교의 등교시간인 7:30~8:00경, 피조사자 1.은 위 학교 인성인권부 교사 000과 교사 000의 도움을 받아, 위 학 교 정문에서 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거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다. 그 날은 위 학 교 0학년 학생들이 졸업사진을 찍는 날이었다.

- 나) 피조사자 1.은 소지품을 검사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소지품검 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 다) 피조사자 1.과 다른 교사들은, 0학년 학생들을 일렬로 줄을 서게 하고, 학생들의 책가방 및 교복 주머니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 지품을 검사하였다.
- 라) 소지품검사가 이루어지는 중, 줄을 서 있던 학생들(등교하면서 소지품검사를 알게 된 학생들 포함) 중 일부는, 소지하고 있는 화장품 과 파우치를 정문 근처의 화단과 풀숲, 흙 등에 숨겼다.

### 2) 2차 일괄 소지품검사 관련

- 가) 2015. 6. 10.(수) 5·6교시, 피조사자 1.은 인성인권부 소속 교사 000(여성), 000(여성)과 함께, 0학년 각 반(1반부터 10반) 교실에서, 화장품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거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였으며, 교사 000(남성), 교사 000(남성)은 0학년각 반 교실 앞 복도를 통제하고, 신발장 등에 숨겨 놓은 화장품 등을찾는 역할을 하였다.
- 나) 피조사자 1.을 비롯한 교사들은, 위와 같이 소지품을 검사하면 서, 학생들에게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았 다.
  - 다) 피조사자 1.은, 학생들로부터 수거하고 교사들이 찾아낸 화장

품 등을 쓰레기봉투(사용하지 않은 새 것)에 담아 보관하였고, 2015. 7. 19. 수거한 화장품 등을 학생들에게 반환하였다.

#### 3) 연대책임 관련

- 가) 2012. 5.부터 학교생활 중 생활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2013 년부터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등교 혹은 하교하다 적발되면, 해 당 학생이 속한 학급 학생 전체가 1일 동안 생활복 등을 입지 못하게 하는 연대책임제를 실시하였다.
- 나) 위 연대책임제는, 학생들이 생활복을 입고 등교 혹은 하교하는 경우가 여러 번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급회의 및 학년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결정으로 시행되었다.
- 다) 2015. 7. 15. 학생회의에서 위와 같은 연대책임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피조사자 2.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연대책임제를 폐지하고 학교생활규정상 '교복 미착용'으로 위반한 학생들에게 벌점 5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나. 판단

# 1) 일괄 소지품검사 관련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 사는 지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가 학 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것 으로 예상되는 물품이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 를 구하여야 하며, 셋째,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검사 장소, 검사자, 검 사 방법(예, 가방, 주머니, 신체접촉 등) 등을 고려하여 소지품 검사를 받는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15-학인-00036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 2015. 9. 24. 결정)

000000고등학교에서 2015. 6. 10. 실시한 소지품 검사(교문, 교실) 와 관련하여 검토하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지품 검사에 있어서 첫 번째 요건으로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 1)-가)항, 2)-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조사자 1. 등 교사들이 소지품을 검사한 목적은학생들의 화장품 소지를 지도하기 위한 것이고, 화장품은 '학생 또는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소지품 검사를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을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두 번째 요건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 1)-나)항, 2)-나)항과 같이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 지 않았으므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요건은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있어서 검사 장소, 검사자, 검사 방법(예, 가방, 주머니, 신체접촉 등) 등을 고려하여 소지품 검사 를 받는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인정사실 1)-다)항, 2)-가)항과 같이, 공개적으로 다른 학생이 학생의 소지품을 모두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학생들의 피해 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2015. 6. 10. 위 학교가 실시한 소지품 검사는,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들이 소지하였다고 예측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모든학생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는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위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은 제14조 제3항 1호에서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중 용의복장에 관해 지도하면 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화장품 소지여부를 목적으로 하여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조사자 1.은, '학생들로 하여금 용의복장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지도받은 학생과 지도받지 않은 학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정 당한 목적을 가지고 위 소지품검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지품 검사를 위한 정당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 및 인격권(검사로 위생용품 등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소지품이 노출되어 수치스러웠다는 일부 학생들의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이 있음)을 침해하였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피조사자 1,을 비롯하여 이에 도움을 준 다른 교사들 역시, 학생생활교육을함에 있어서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이므로, 위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학교에서도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연대책임 관련

「헌법」제13조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3조 제1항은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26조 제3항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대책임(연좌제, 連坐制, Implicative system)은, 한 사람의 규정

(법률)위반 등에 대하여 특정 범위의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벌받는 제도를 말한다.

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생활복(체육복 포함)을 착용한 상태로 등·하교하다가 적발되면, 인정사실 3)과 같이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으로 학생생활교육을 하였는데, 이는 인격적 존재인 학생의 인격 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학교에서 연대책임제를 도입하고 실시하게 된 것은, 학생 임원이 제안하여 학생회의를 통해 성립된 것으로, 학생차지활동의 결과물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승인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학생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배되거나 인권침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하였어야 한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 3)-다)항과 같이, 2015. 7. 15. 피조사자 2.는 생활복 연대책임에 대하여는 폐지하고, 생활복을 입을 경우, '교복미착용'으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벌점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본 조사에서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벌점제의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이 있는 경우, 위 학교에서는 그 결정을반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이 학생들의 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학

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다른 학교에 서 적용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Ⅲ.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2. 21.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서명)

[별지: 관련 규정]

###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7조(사생활의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②(생 략)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 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 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